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를 농업인상담소로 변경하여 현재 통용되는 명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명칭변경(안 제15조, 제16조)
 - 농민상담소 → 농업인상담소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5. 검토의견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수년전부터 「농민」이 「농업인」으로 통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며, 또한 경상북도 대부분 시군에서 농업인상담소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명칭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